

[일련번호 : 64]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집행 및 지급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회계서류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급내역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재정(피복비)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2999(2025.3.25.)호에 따라 피복비 집행 시에는 상세품목 영수증과 실착 사진 첨부, 물품검수조서 및 수불대장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를 집행하였으며, 정당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 및 지급조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피복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피복비 집행현황

연번	지출품의일	적요	금액(원)	부적정 내역
1	20220729	안심일자리사업 근로자 피복 구매 비용 지출(하반기)	400,000	-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아닌 자(안심일자리사업 근로자 4명)에게 피복비 집행, 수령증 및 지급조서 미첨부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피복비 집행 및 지급 관련 증빙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